

기업 R&D 조세지원 개선을 위한 산업계 의견

2012. 9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R&D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며,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유인이 중요함
 - 기업의 R&D 투자 확대 및 산업기술 발전은 조세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며, 국내 산업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련 정책지원이 유지·확대되어야 함
 - 기업 R&D 투자가 국가 R&D의 70% 이상을 기여하고 있는 가운데, R&D를 통한 기술개발은 불확실성이 높고 공공재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이 지속되어야 함

- 산업계는 기업 및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R&D 현장의 수요가 반영된 정책 건의과제를 발굴하여 건의함
 - 5개 경제단체는 기획재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검토하고, 경제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건의서를 작성하였음
 - *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 기업의 의견을 모아 올 5월에도 ‘기업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6건의 정책과제를 하기와 같이 건의하는 바, 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함

1. 서비스 R&D 조세지원 확대

- [현황] 2011년 이후 정부는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특히 '조세지원'을 가장 선호하고 있음
- [문제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서비스 분야의 공동·위탁 R&D를 조세지원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서비스 R&D에 대한 세액공제율 축소를 추진하고 있음
- [개선 방안] ① 서비스 R&D 세액공제율을 과학기술분야와 동일하게 현행 수준 유지, ② 서비스 분야 공동·위탁 R&D에 대해서도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 산입'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R&D 조세지원 허용

2. R&D 세액공제시 연구비 증가분 계산방식 현행 유지

- [현황] 정부는 2012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R&D 세액공제 증가분 산식 계산시 기준 시점을 '직전 4년 평균 R&D비용'에서 '직전연도 R&D비용'으로 조정을 계획하고 있음
- [문제점] 연구비 증가분 계산방식을 세법개정(안)대로 조정할 경우, 중소기업은 증가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직전연도 R&D 투자 금액보다 100% 이상 증가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 [개선 방안] R&D 세액공제시 증가분 계산방식을 현행수준*을 유지
 - * (당해연도 R&D비용 - 직전 4년 평균 R&D비용) X 50%(대기업 40%)
 - * 직전연도 R&D비용이 직전 4년 평균 R&D비용보다 적은 경우 증가분방식의 적용을 배제하는 단서조항 미적용

3.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구간 신설 관련 대상범위 확대

- [현황] 정부는 2012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중견기업 R&D비용 세액 공제구간을 신설하여,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의 R&D비용에 대해 8%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 [문제점] 매출액 3천억 미만 중견기업에 대해서만 우대하는 방안은 중견기업을 글로벌 규모의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데 미흡
- [개선 방안] 일반 R&D비용 세액공제율 8% 적용대상을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2012년도 세법개정안)' →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

4. 기술이전 및 취득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 [현황]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기업경쟁력의 핵심인 무형자산(지식,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Patent Box*' 조세지원제도 운영
 -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식재산(IP)의 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을 인하시켜 주는 조세지원제도(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페인, 스위스, 중국, 영국('13년 도입예정) 등에서 실시중)
- [문제점]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기술취득에 한해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2005년말 폐지되는 등 기업의 기술거래 관련 조세지원제도가 전반적으로 취약함
- [개선 방안] ① 등록특허 등 일정요건을 갖춘 지식재산 및 휴면특허의 이전·처분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허용, ② 중소기업의 기술취득시 세액공제비율을 현행 7%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25%) 수준으로 확대

5. R&D 세액공제 범위에 특허출원 관련 비용 포함

- [현황] 기업의 가치에서 특허를 비롯한 무형자산이 급증하고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R&D 조세지원 및 각종 제도를 통하여 특허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음
- [문제점]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특허정보조사비 등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개선 방안]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
 -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제외 대상에서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업무' 삭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6.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하여 출원·등록·실시에 대하여 보상하고 있으나,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직무발명 보상의 범위를 규정한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판단시 지식재산권의 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음(소득세법 집행기준 12-0-5, 재소득-46073-181, 2002.12.30)
 - 연구개발 성과물과 성과물에 대한 특허를 타 기업체에 이전 및 실시권을 설정한 후, 그 기업체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해당 연구원에게 보상금(기술료 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소득-11, 2012.1.5)
- [개선 방안] ①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에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개인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지급하는 정당한 보상을 모두 포함, ② 비과세 기타소득에 직무발명의 결과로 발생하는 기술이전에 대한 보상금을 포함

1

서비스 R&D 조세지원 확대

□ 현 황

- 주요 국가들은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R&D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R&D를 위한 지원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 독일은 '90년 이후 R&D지원액의 15%를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지원(현대경제연구원, '10)
 - 사업서비스 수치 : ('00년) △80.1억달러 → ('08년) 129.8억달러
 - ※ 중국은 「과학기술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11~'15)」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관련 과학기술 혁신활동을 중점 추진분야로 지정(중국 과학기술부, '11)
- 2011년 이후 정부는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기 시작함
 - 의료 및 보건, 교육, 문화서비스 등 11개 산업을 대상으로 기업 연구소 인정제도를 도입('11. 7)
 -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의 범위에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추가하여 R&D 조세지원의 대상에 서비스 분야를 포함('11. 12)

□ 문제점

- 서비스 분야의 본격적인 R&D 성과 창출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서비스 R&D 지원제도는 기업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함(산기협, '12. 9)
 - 최근 1년간 지식서비스 분야 연구소로 인정받은 기업의 96%가 '13년 이후 본격적인 R&D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
 - 현재 서비스 R&D 지원제도에 대해서 응답기업의 66%가 부족하다고 대답했으며, 보통은 28%, 충분하다는 응답은 6%에 그쳤음

- 서비스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들은 '조세지원'을 가장 선호함 (산기협, '12. 9)
 - 최근 1년간 지식서비스 분야 연구소로 인정받은 기업의 48%가 조세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 R&D과제 정부지원 확대(36%), 인력양성(12%), 기타(4%)
- 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서비스 분야의 공동·위탁R&D를 조세지원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서비스 R&D 세액공제율 축소를 추진하고 있음
 - 대학, 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공동·위탁 연구시 조세지원 불가능
 - * 최근 1년간 지식서비스 분야 연구소로 인정받은 기업의 72%가 공동·위탁 R&D 경험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추진경험 26%, 추진미경험이나 추진계획 있음 46%, 추진 미경험이며 추진계획 없음 28%)(산기협, '12.9)
 - 공동·위탁 R&D 경험이 있는 기업의 92.3%가 R&D성과에 기여했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7.7%에 그쳤음
 -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과도한 세수감소 우려를 이유로 서비스 R&D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과학기술 R&D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국회 기획재정위 정책현안자료, '12.7)
- 서비스 분야 R&D를 수행하는 기업의 R&D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외부 전문기관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한 지식의 확산(Knowledge Spillover)활동이 필수적임

□ 개선방안

- (기존) 서비스 분야 R&D 세액공제율 현행 수준 유지(과학기술분야와 동일)
 - 당기분 : 25%(대기업 3~6%), 증가분 : 50%(대기업 40%)
- (신설) 서비스 분야 공동·위탁 R&D에 대해서도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R&D 조세지원 허용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동법 시행령 [별표 6]
- 건의(안)

현행	산업계 건의(안)
<p>「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 ② (생략) 1. ...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p>	<p>「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 ② (현행과 같음) 1. ...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p>
<p>「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1. 연구개발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p>	<p>「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1. 연구개발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p>

2 R&D 세액공제시 연구비 증가분 계산방식 현행 유지

□ **현황**

- 우리나라 R&D 세액공제 제도는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을 선택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 당기분 : 당해연도 R&D비용 × 25%(대기업 3~6%)
 - ** 증가분 : (당해연도 R&D비용 - 직전 4년 평균 R&D비용)×50%(대기업 40%)
- R&D 조세지원의 가장 큰 목적은 기업의 R&D투자 증가를 유인하는 것이며, 이 중 증가분 방식은 매년 R&D투자를 일정수준 이상 증가시키는 등 기업의 적극적인 R&D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측면이 강함

□ 문제점

- 정부는 2012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R&D 세액공제 증가분 산식 계산시 기준 시점을 '직전 4년 평균 R&D비용'에서 '직전연도 R&D비용'으로 조정을 계획하고 있음
 - (기존) 직전 4년 평균 R&D비용
 - (개정) 직전연도 R&D비용. 단, 직전연도 R&D비용이 직전 4년 평균 R&D비용보다 적은 경우 증가분 방식 적용 배제
- 연구비 증가분 계산방식을 세법개정(안)대로 조정할 경우 중소기업이 증가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연도 R&D투자 금액보다 100% 이상 증가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 (사례) 2009년과 2010년에 R&D로 1억원씩 투자하던 벤처기업이 2011년 이후 계속해서 100%씩 R&D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현재는 증가분 R&D비용인 3억원을 세액공제
 - 개정안에 따르면 증가분 세액공제액은 2억원으로 당기분을 적용 받았을 때와 동일(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 미존재)

(단위: 억원)

연도	'09	'10	'11	'12	'13년
R&D비용	1	1	2	4	8
공제세액	직전연도 4년 평균 : 2				(현행) 3* (개정) 2**

* [증가분 : $(8-2) \times 50\% = 3\text{억원}$] > [당기분 : $8 \times 25\% = 2\text{억원}$]

** [증가분 : $(8-4) \times 50\% = 2\text{억원}$] = [당기분 : $8 \times 25\% = 2\text{억원}$]

□ 개선방안

- R&D 세액공제시 증가분 계산방식 현행수준* 유지
 - * (당해연도 R&D비용 - 직전 4년 평균 R&D비용)×50%(대기업 40%)
 - * 직전연도 R&D비용이 직전 4년 평균 R&D비용보다 적은 경우 증가분방식의 적용을 배제하는 단서조항 미적용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3**중견기업 R&D 세액공제 구간 신설 관련 대상범위 확대****□ 현 황**

- 정부는 2011년부터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에 대해 유예기간 종료 후 5년간 일반 R&D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인하조치를 실시함
- 한편 2012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의 R&D비용에 대하여 공제율 8%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중간구간 신설을 추진함

<중견기업* R&D비용 세액공제구간 신설>

구 분	중소기업	이후 1~3년	이후 4~5년	중견기업	일반기업
공제율	25%	15%	10%	8%	3~6%

*** 중견기업의 범위**

- i)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 ii)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닐 것
- iii)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문제점

- 기존 중견기업의 경우 일반 R&D 세액공제율 적용에서 배제되어 대기업과 동일한 공제율 적용
 - ※ 중견기업의 37.3%가 R&D 조세혜택 감소를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함 (중견기업연합회, '12.6)
 - ※ 중견기업의 54.5%가 중소기업을 졸업했을 때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조세혜택 축소'를 꼽았음(중소기업연구원)
- 매출액 3천억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만 우대하는 방안은 중견 기업을 글로벌 규모의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데 미흡
 - '03년 기준 매출액 1,500~5,000억원 구간 264개 기업 중 54.5% (144개)가 해당 구간에서 성장 정체 중이며, 21.6%(57개)는 매출액 1,500억원 미만으로 퇴보(제130차 비상경제대책회의, '12.8.9)

- 기업들은 매출액 3,000억원이 넘어서면서 매출액과 수출액이 감소하는 등 성장정체기 도래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출액 1조원 미만 기업 중 혁신역량과 성장형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개선방안

-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 R&D비용 세액공제율 8% 적용대상을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2012 세법 개정안)' →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건의(안)

정부 세법개정(안)	산업계 건의(안)												
<p>□ 중견기업에 대한 별도 공제율 구간 신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50%;">구 분</th> <th style="width: 50%;">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중소기업</td> <td>25</td> </tr> <tr> <td>이후 1~3년차</td> <td>15</td> </tr> <tr> <td>이후 4~5년차</td> <td>10</td> </tr> <tr style="background-color: #00bcd4; color: white;"> <td>중견기업</td> <td>8</td> </tr> <tr> <td>일반기업</td> <td>3~6</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기업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ii)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닐 것 iii)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일 것 	구 분	공제율(%)	중소기업	25	이후 1~3년차	15	이후 4~5년차	10	중견기업	8	일반기업	3~6	<p>□ (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기업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좌 동) ii) (좌 동) iii)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1조원 미만일 것
구 분	공제율(%)												
중소기업	25												
이후 1~3년차	15												
이후 4~5년차	10												
중견기업	8												
일반기업	3~6												

□ 현 황

- 기업의 기술거래 실적이 적으며, 산-학협력 유형 중에서 기술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게 나타남
 - 기술개발 수행 중소기업의 63.3%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소기업은 주로 자체개발(82.4%)을 통해 R&D를 추진하고 있음(중기청·중기중앙회, '12)
 - 산-학협력 기업의 4.7%만이 기술이전 경험(산기협, '11)
 - 대기업 : 4.6%, 중소기업 : 4.8%
 - 기업의 84.6%가 최근 3년간 기술이전, 기술취득 등의 기술거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KIAT, '09)
 - 중소기업의 89.4%가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함(산기협, '12)
 -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 Economy)하에서 기업경쟁력의 핵심인 무형자산(지식,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Patent Box*' 조세지원제도 운영
 -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식재산(IP)의 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을 인하시켜 주는 조세지원제도(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페인, 스위스, 중국, 영국('13년 도입예정) 등에서 실시중)
 -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기술취득에 한해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중소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
 - 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
- ※ 2009년 말 세제개편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100분의 3)는 폐지

□ 문제점

- 우리나라의 기업의 기술거래 관련 조세지원제도는 취약한 것이 현실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2005년 말)
 - ※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 기술비법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 중소기업의 기술취득에 대한 조세지원 미흡
 - ※ '11년 기준 기술취득에 대한 조세지원 금액은 4억원에 불과(기재부, '11)

□ 개선방안

- 대기업 휴면특허의 중소기업으로의 이전을 위해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재도입
 - 등록특허 등 일정요건*을 갖춘 지식재산의 이전·처분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허용
 - * 특허, 실용신안, 소프트웨어저작권 등으로 대상을 제한(상표, 디자인 제외)하거나, 또는 국가연구개발과제로부터 발생한 특허로 지원대상을 한정
- 중소기업의 기술취득시 세액공제비율을 현행 7%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25%) 수준으로 확대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건의(안)

현행	산업계 건의(안)
제12조(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제12조(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u>기술이전소득에 대하여는 특허, 실용신안, 소프트웨어저작권에 한해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u>
②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u>100분의 7</u>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 ----- 2015년 12월 31일까지 ----- ----- 100분의 25 -----

□ 현 황

- 우리나라의 최근 3년간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WIPO 통계)하고 있으며, 전세계 8번째로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 7백만 건을 돌파함(특허청, '11)

* 특허출원 4위('10), PCT 국제출원 5위('10), GDP 대비 특허생산성 1위('08)

< 연도별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 >

(단위 : 건)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특허	166,189	172,469	170,632	163,523	170,101	178,924
실용신안	32,908	21,084	17,405	17,144	13,661	11,854
디자인	51,039	54,362	56,750	57,903	57,187	56,524
상표	122,384	132,288	127,910	126,420	121,125	123,814
합계	372,520	380,203	372,697	364,990	362,074	371,116

* 자료 : 특허청

- 기업의 가치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게 되면서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능력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됨



- R&D 전 단계에서 수행되는 특허정보 및 특허동향에 대한 조사활동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NPEs*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 NPEs(Non-Practicing Entity)란 특허관리 전문회사로, 상품을 제조·판매하지 않고 각국의 특허를 사들인 후 특허침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거액의 특허 사용료를 받아내는 특허전문기업을 말함. 특허괴물(Patent Troll)로도 불리움

□ 문제점

- 현재 특허정보조사비 등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 국가 R&D사업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직접비(연구활동비)에 특허정보조사비, 기술 정보수집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 <R&D 조세지원을 통해서 특허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국가>
 - 프랑스 : R&D 세액공제의 기반으로 R&D를 위해 구매된 특허와 관련된 감가 상각충당금, 특허생산 및 유지비용, 방어비용, 관련 보험료 등을 포함
 - 미국 : 적격 연구개발비용에 특허를 신청하고 완성시키는데 들어간 특허변호사 비용 등 특허를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포함
 - 포르투갈 : 적격 R&D비용에 R&D 활동과 관련된 특허의 취득을 포함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허의 등록 및 유지비용도 포함
 - 스페인 : 적격 R&D비용에 특허, 라이선스, 노하우, 디자인 형태의 진보기술 획득을 포함

□ 개선방안

- 특허정보조사비 등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
 -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제외 대상에서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업무’ 삭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별표 6]

□ 현 황

- 오늘날 개인발명가에 의한 발명은 소수에 불과하고, 기업체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직무발명이 8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직무발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특허청, '11)
- 기업으로의 R&D인력 유입 및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 시스템이 필수적이며, 정부 차원에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표적인 지원정책이 '직무발명보상제도'임
-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5호 라목>

- 기타소득 중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①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문제점

- 직무발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의 보상을 실시함
 - 출원보상: 종업원의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신고하고 연구기관 명의로 출원하였을 때 그에 따른 보상금
 - 등록보상: 직무발명으로 출원한 발명이 특허청에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 실시보상: 직무발명으로 신고된 종업원의 발명이 기업체에 기술이 이전되었을 때 입금된 기술료의 일정비율을 관련 법률 및 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일종의 기술이전보상금)

- 과세관청에서는 직무발명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직무발명 보상의 범위를 규정한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판단시 지식재산권의 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음(소득세법 집행기준 12-0-5, 재소득-46073-181, 2002.12.30)
 - 특허출원 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 되지 않은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연구개발 성과물과 성과물에 대한 특허를 타 기업체에 이전 및 실시권을 설정한 후 그 기업체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해당 연구원에게 보상금(기술료 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소득-11, 2012.1.5)
- 하지만 특허 등록 전의 발명 또한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 이므로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특허법 제2조는 발명과 특허발명(특허를 받은 발명)을 별도로 정의 하고 있으며, 특허등록을 받아야만 발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 또한 직무발명보상금과 기술이전보상금은 그 지급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 발명자에게 발명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을 특정 유형으로 한정하지 않고, 연구기관의 정관 내지 운영규정에서 자유롭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4조 제2항)
 - 대법원 판례 또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료율을 고려함으로써 직무발명보상금과 기술이전보상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음(大判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 개선방안

-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에 지식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개인의 직무발명에 대해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급하는 정당한 보상의 경우 모두 포함
- 비과세 기타소득에 직무발명의 결과 발생하는 기술의 이전 실시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

□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2조 / 발명진흥법 제15조